〈2022 보세사 한권으로 끝내기〉 개정 6판 1쇄(발행일 : 2021년 11월 5일) 개정법령 추록

※ 안녕하십니까, 시대고시기획입니다. **<2022 보세사 한권으로 끝내기> 개정 6판 1쇄** 도서 출간 이후 개정된 법령 사항으로 인한 교재 수정사항을 추록으로 등록하오니, 학습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추록의 법령 반영일은 다음과 같습니다(본서 p.805~806 참조).

■ **법령규정**

- 관세법[시행 2022. 4. 1.] [법률 제18583호, 2021. 12. 21., 일부개정] **(시행예고)**
- 관세법 시행령[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 관세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1.] [기획재정부령 제881호, 2021. 12. 31., 일부개정]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2. 28.] [법률 제18660호, 2021. 12. 28., 일부개정]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12. 16.] [대통령령 제32229호, 2021. 12. 16., 일부개정]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1.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 2022. 1. 21., 타법개정]

■ **고시규정**

-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시행 2021. 12. 28.] [관세청훈령 제2158호, 2021. 12. 28., 일부개정]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시행 2022. 1. 1.] [관세청고시 제2022-4호, 2022.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시행 2021. 9. 30.] [관세청고시 제2021-58호, 2021. 9. 30., 일부개정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시행 2021. 12. 28.] [관세청고시 제2021-76호, 2021. 12. 28., 일부개정]
-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시행 2021. 11. 1.] [관세청고시 제2021-60호, 2021. 10. 15., 일부개정]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시행 2021. 12. 8.] [관세청고시 제2021-64호, 2021. 12. 8., 일부개정]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시행 2022. 1. 1.] [관세청고시 제2022-5호, 2022. 1. 1.,일부개정]
-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시행 2021. 12. 16.] [관세청고시 제2021-66호, 2021. 12. 16., 일부개정]
-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시행 2021. 12. 1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15호, 2021. 12. 16., 폐지제정]
-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시행 2021. 12. 23.] [관세청고시 제2021-69호, 2021. 12. 23., 일부개정]

● **교재 변동 내용**(빨간색은 수정 또는 삭제, 파란색은 변동된 내용을 뜻합니다)

페이지	변동 전	변동 후
p.16	더 알아보기 <앞부분 생략> •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더 알아보기 <앞부분 생략> •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p.28	㉡ 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2. 우편물. 다만,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3. 탁송품 또는 별송품	㉡ 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2. 우편물. 다만,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우편물(「관세법」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제2항에 따라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3. 탁송품 또는 별송품
p.28	㉢ 적용제외대상 [20 기출] <앞부분 생략> 라. 법 제8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일한 간이세율의 적용이 과세형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 적용제외대상 [20 기출] <앞부분 생략> 라. 「관세법」 제8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일한 간이세율의 적용이 과세형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p.28~29	㉣ 적용절차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 제4항(잠정세율), 제65조(긴급관세), 제67조의2(특정국물품 긴급관세),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	㉣ 적용절차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 제4항(잠정세율), 제65조(긴급관세), 제67조의2(특정국물품 긴급관세),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

	급관세),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국제협력관세) 및 제76조(일반특혜관세)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부터 당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긴급관세),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국제협력관세) 및 제76조(일반특혜관세)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여 해당 물품에 그 낮은 세율("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부터 당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31	•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 화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했을 것 -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했을 것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 -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
p.34	㉣ 보정이자 세관장은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당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 보정이자 세관장은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가산세와 관련된 조항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정이자)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2.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정이자)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2.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상기 ㉄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후 가산세를 신청을 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해야 한다. 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p.39	더 알아보기 <앞부분 생략> •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더 알아보기 <앞부분 생략> •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p.40	② 신고불성실 가산세 전부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전부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② 신고불성실 가산세 전부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전부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p.52	**(2) 정부용품 등의 면세(「관세법」 제9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 략 2.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군수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은 제외한다.	**(2) 정부용품 등의 면세(「관세법」 제9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 략 2.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군수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은 제외한다. 2의2.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p.59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압축공기식 엔진 및 모터 등 HS code별로 열거)

기 간	2019.5.1~ 2021.12.31	2022.1.1~ 2022.12.31	2023.1.1~ 2023.12.31	2024.1.1~ 2024.12.31	2025.1.1~ 2025.12.31
감면율	100%	80%	60%	40%	20%

• 그 밖의 물품

기 간	2019.5.1~ 2021.12.31	2020.1.1~ 2020.12.31	2021.1.1~ 2021.12.31	2022.1.1~ 2022.12.31	2023.1.1~ 2023.12.31
감면율	90%	80%	70%	60%	50%
기 간	2024.5.1~ 2024.12.31	2025.1.1~ 2025.12.31			
감면율	40%	20%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압축공기식 엔진 및 모터 등 HS code별로 열거)

기 간	2022.1.1~ 2022.12.31	2025.1.1~ 2025.12.31	2026.1.1~ 2026.12.31	2027.1.1~ 2027.12.31	2028.1.1~ 2028.12.31
감면율	100%	80%	60%	40%	20%

• 그 밖의 물품

기 간	2019.5.1~ 2021.12.31	2020.1.1~ 2020.12.31	2021.1.1~ 2021.12.31	2022.1.1~ 2022.12.31	2023.1.1~ 2023.12.31
감면율	90%	80%	70%	60%	50%
기 간	2024.5.1~ 2024.12.31	2025.1.1~ 2025.12.31			
감면율	40%	20%			

p.62

감면율

대 상	감면율
제1호 물품	
제2호 물품	
제3호 물품(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
제3호 물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50

② 감면율

대 상	감면율
제1호 물품	
제2호 물품	
제3호 물품(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
제3호 물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50

p.63	더 알아보기 현재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감면대상 중 제1호 물품과 제2호 물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던 별표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제3호 물품에 대하여만 실제감면이 적용되고 있다(2021년 9월 기준).	삭 제
p.63	6. ·전시회·공진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중 당해 행사의 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6.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해당 행사의 성격·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p.64	20. 수출물품 사양확인용 물품	20. 수출물품 규격확인용 물품
p.67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의 관세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했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②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으로서 자진신고한 물품 여행자가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으로서 자진신고한 물품(여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의 관세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했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3.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

	행자휴대품 감면 중 감세 부분 참조)이 보세판매장에 환불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②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으로서 자진신고한 물품 여행자가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으로서 자진신고한 물품(여행자휴대품 감면 중 감세 부분 참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1.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2.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p.77	**(1) 과세 전 통지** 세관장은 수정 및 경정 또는 부과고지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해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생 략 4.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5~10. 생 략	**(1) 과세 전 통지** 세관장은 수정 및 경정 또는 부과고지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해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3. 생 략 4. 면제된 관세를 징수하거나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5~10. 생 략
p.87	① 용어정의 ㉠ "세관장확인" : 세관장이 수출입신고자료의 심사과정에서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요건신청" : 수출입시 허가·승인 등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가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허가·승인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① 용어정의 ㉠ "요건확인기관" :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확인·증명하는 수출입 관련 기관을 말한다. ㉡ "세관장확인" : 세관장이 수출입신고자료의 심사과정에서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자율확인우수기업” : 수출입신고시 세관장확인을 생략하고 통관 이후 요건확인기관이 사후적으로 관리하도록 관세청장과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 “요건신청” : 수출입시 허가·승인 등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가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허가·승인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 “인터넷 통관포털”(“통관포털”) : 수출입신고 등 민원업무처리 및 정보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www.unipass.customs.go.kr로 접속하게 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말한다. ㉥ “자율확인우수기업” : 수출입신고시 세관장확인을 생략하고 통관 이후 요건확인기관이 사후적으로 관리하도록 관세청장과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 “요건면제물품” :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입 요건이 면제되는 물품으로 면제절차는 이 고시 또는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p.88	㉡ 통관포털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요건신청을 하려는 자는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직접 신청해야 한다. ㉢ 요건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서류의 정정 등 그 밖의 요건신청과 관련된 절차는 개별 법령에 따라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신고내역과 요건승인내역을 전산으로 상호대사하여 자동으로 심사하는 전자심사제를 운영할 수 있다.	㉡ 통관포털을 이용하지 않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요건신청을 하려는 자는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직접 신청해야 한다. ㉢ 요건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서류의 정정 등 그 밖의 요건신청과 관련된 절차는 개별 법령에 따라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개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통관포털을 이용한 요건신청 서식 및 업무절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요건면제물품이라 하더라도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물품인 경우에는 ㉢의 내용을 적용한다. ㉥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신고내역과 요건승인내역을 전산으로 상호대사하여 자동으로 심사하는 전자심사제를 운영할 수 있다.
p.88	㉠ 확인대상 「관세법」에 따라 통관할 때 세관장이 확인해야 할 수출입물품의	㉠ 확인대상 「관세법」에 따라 통관할 때 세관장이 확인해야 할 수출입물품의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별표 1(수출물품)과 별표 2(수입물품)에 열거되어 있다. 그 중 대상법령만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뒷부분 생략>	대상법령 및 물품의 구비요건과 물품별 수출입요건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별표 1(수출물품)과 별표 2(수입물품)에 열거되어 있다. 그 중 대상법령만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뒷부분 생략>
p.89	1.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입승인면제물품 2. 「통합공고」상 요건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한 물품 3.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업체), 자율확인우수기업 등 관세청장이 공고하는 자가 수출입신고하는 물품	1.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입승인면제물품(제2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 「통합공고」상 요건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한 물품 3.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업체), 자율확인우수기업 등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 5의 세관장확인생략 대상법령 및 수출입자가 수출입신고하는 물품
p.89	<내용 추가> ㉢ 남북 간 반출입 물품에 대한 반출입승인서 추가 확인	더 알아보기 세관장확인생략 대상법령 및 수출입자(「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5) **대상법령** / **대상 수출입자** 전파법 / •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table>
<tr><td></td><td></td><td>
<table>
<tr><td>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td><td>•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td></tr>
<tr><td>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td><td>•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td></tr>
<tr><td>화학물질 관리법</td><td>•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td></tr>
<tr><td>방위사업법</td><td>•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td></tr>
</table>
㉢ 남북 간 반출입 물품에 대한 반출입승인서 추가 확인
</td></tr>
<tr><td>p.91~92</td><td>3 의무이행요구
(1) 요 구
<생 략>
(2) 면제사유</td><td>3 의무이행요구 및 조사
(1) 요 구
<생 략>
(2) 조 사
의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3) 면제사유</td></tr>
</table>

p.104	**3 품질 등 허위·오인 표시 물품의 통관제한** 세관장은 물품의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품질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 등을 오인(誤認)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인 물품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산업표준화법」등 품질 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3 품질 등 허위·오인 표시 물품의 통관제한** 세관장은 물품의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품질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 등을 오인(誤認)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인 물품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등 품질 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p.105	**5. 통관 보류 대상**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 수출·수입(입항 전 수입신고 포함)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신고 시의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246조의3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5. 「국세징수법」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관세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5. 통관 보류 대상**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 수출·수입(입항 전 수입신고 포함)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신고 시의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246조의3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4의2. 제246조의3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5. 「국세징수법」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관세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p.229	③ 과징금의 납부 과징금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하고, 과징금은 분할납부할 수 없다.	③ 과징금의 납부 과징금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더 알아보기 종전 규정에 따르면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1.09.24. 관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2014호)에 따라 과징금의 분할납부 규정이 삭제되었다. 「행정기본법」 제29조에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한 일반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금지하고 있는 36개 대통령령을 「행정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정비한 것이다.
p.328	⑤ "검사"란 「식품위생법」 제19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⑥ "불합격품"이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역 불합격품과 「식품위생법」제19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물품을 말한다.	⑤ "검사"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⑥ "불합격품"이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역 불합격품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물품을 말한다.
p.331	**6 불합격품 관리** "불합격품"이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검역 불합격품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물품을 말하며,	**6 불합격품 관리** "불합격품"이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검역 불합격품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물품을 말하며,

p.343	**25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물품반입정지 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인에게 물품반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과징금의 한도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 갈음하는 반입정지일수 1일당 연간매출액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한다. ㉰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 과징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다. ㉲ 산정 금액의 4분의 1 이내에서 세관장이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관세법 시행령」제285조의7 제5항).	**25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물품반입정지 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인에게 물품반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과징금의 한도는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로 한다. ㉯ 갈음하는 반입정지일수 1일당 연간매출액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한다. ㉰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 산정 금액의 4분의 1 이내에서 세관장이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과징금의 한도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한다(「관세법」 제178조 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193조의3 제3항).
p.364	10. "식품류"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10. "식품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p.393	지정장치장 반입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단,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김해공항 항역 내 지정장치장 반입물품의 장치기간은 2개월로 하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2개월 범	지정장치장 반입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단,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김해공항 항역 내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된 물품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에 해

	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당하는 물품(특송물품)의 장치기간은 2개월로 하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2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p.402	1. 신속한 매각을 위하여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에서 전자문서를 통하여 매각하려는 경우	1. 신속한 매각을 위하여 사이버몰 등에서 전자문서를 통하여 매각하려는 경우
p.403	1. 1회 이상 경쟁입찰에 부쳐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단독 응찰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회의 입찰에 체감될 예정가격 이상의 응찰자가 있을 때	1. 1회 이상 경쟁입찰에 부쳐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단독 응찰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회의 입찰에 체감될 예정가격 이상의 응찰자가 있을 때
p.404	㉮ 수의계약 대상 중 "1. 1회 이상 경쟁입찰에 부쳐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회의 입찰에 체감될 예정가격 이상의 응찰자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로서 그 체결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해당 물품에 대한 다음 회 이후의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수의계약 대상 중 "1. 2회 이상 경쟁입찰에 부쳐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회의 입찰에 체감될 예정가격 이상의 응찰자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로서 그 체결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해당 물품에 대한 다음 회 이후의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p.435	**(1) 물품의 하역**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관세법」 제140조 제4항).	**(1) 물품의 하역**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관세법」 제140조 제4항).
p.453	**2 용어정의** 1. "통관지세관" :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보세화물 취급 및 적재화물목록 제출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세관을 말하며, 등록(갱신)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혼재화물적하목록 제출건수가 가장 많은 세관을 말한다. 다만, 신청일 이전에 적재화물목록 제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향후 적재화물목록 제	**2 용어정의** 1. "통관지세관" :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보세화물 취급 및 적재화물목록 제출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세관을 말하며, 등록(갱신)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혼재화물적하목록 제출건수가 가장 많은 세관을 말한다. 다만, 신청일 이전에 적재화물목록 제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향후 적재화물목록 제

	출을 주로 할 세관을 말한다. 2. “혼재화물적하목록 제출” :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선하증권(House 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House AWB) 내역을 기초로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여 항공사 또는 선사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출을 주로 할 세관을 말한다. 2. “혼재화물적하목록”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선하증권(House 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House AWB) 내역을 기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화물적재목록을 말한다. 3. “혼재화물적하목록 제출” :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선하증권(House 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House AWB) 내역을 기초로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여 항공사 또는 선사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4. “화물운송주선업자” :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p.453	1. 「관세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6. 법 또는 법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에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 중에 있지 아니할 것	1. 「관세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6. 법 또는 법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에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 중에 있지 않을 것
p.453	**4 등록신청**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 신청서와 다음의 신청인 제출서류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사본 2. 자산평가 증빙서류(개인사업자에 한함) 3. 화물운송주선업의 운영상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 4. 전산설비 보유내역 증빙서류	**4 등록신청** **(1) 신청서의 제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 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는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더 알아보기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관세법 시행령」 제231조) 1. 신청인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영업의 종류 및 영업 장소

더 알아보기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관세법 시행령」 제231조)
등록을 하고자 하는 보세운송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영업의 종류 및 영업 장소
3. 운송수단의 종류·명칭 및 번호(관련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번호를 말한다)

3. 운송수단의 종류·명칭 및 번호(관련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번호를 말한다)

(2) 첨부서류의 제출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사본
2. 자산평가 증빙서류(개인사업자에 한함)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관세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화물운송주선업자 또는 그 임원의 인적사항(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5. 화물운송주선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인적사항(직책,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자) 6. 전산설비 보유내역 증빙서류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9. 국세납세증명서
p.454	**5 등록신청 및 심사** 세관장은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상기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화물운송주선업자 부호가 중복되는지 등을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세관장은 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신청사항을 등록 후 신청인에게 화물운송주선업자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반면 등록요건에 부적합하거나, 처리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5 등록신청 및 심사** 세관장은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상기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화물운송주선업자 부호가 중복되는지 등을 확인하여,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세관장은 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신청사항을 등록 후 신청인에게 화물운송주선업자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반면 등록요건에 부적합하거나, 처리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세관장은 등록(갱신)신청 심사시 실제운영 여부, 명의대여, 등록요건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p.454	**7 등록사항 변동신고**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사항 변동신고서에 따라 지체	**7 등록사항 변동신고**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사항 변동신고서와 신청인 제출서류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관장은 변동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변동사항을

	없이 통관지 세관장에게 그 변동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세관장은 변동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변동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p.455	(1) **보세운송업자 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보세운송업자 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운송업자 등의 업무를 하게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1) **명의대여 등의 금지**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이 고시에 따라 등록된 다른 화물운송주선업자 또는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주선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p.455	(4) **준 용** <생 략>	**(4) 무등록자 화물운송주선업 수행 금지** 화물운송주선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는 등록된 다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 일체의 화물운송주선업을 할 수 없다. **(5) 영업 관련 사항 보고** 화물운송주선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과 관련하여 세관장이 제9조에 따라 업무점검을 하는 경우 업무실적, 등록사항 변경,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 영업 관련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6) 준 용** <생 략>
p.456	**(2) 업무점검** 세관장은 등록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본사 또는 영업소에 대하여 매년 단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등록사항의 변동여부 등에 대한 업무점검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등 다른 규정에 따라 업무점검을 하는 경우 이와 병행하여 점검할 수 있다.	**(2) 업무점검** 세관장은 등록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본사 또는 영업소에 대하여 매년 단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등록사항의 변동여부 등에 대한 업무점검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등 다른 규정에 따라 업무점검을 하는 경우 이와 병행하여 점검할 수 있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

주선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에 관하여 보고를 하거나 장부 또는 화물운송주선과 관련된 계약서 등 그 밖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p.457

위반내용	관련 조항	제재내용
1. 화물운송주선업자 또는 그 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의한 세관장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세법」 제269조, 제270조, 제271조, 제274조	1차 : 업무정지 20일 2차 : 업무정지 40일 3차 : 업무정지 60일
2.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의한 세관장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세법」 제269조, 제270조, 제271조, 제274조	1차 : 업무정지 10일 2차 : 업무정지 20일 3차 : 업무정지 30일
3.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관세법」 제224조	업무정지 해당기간
4.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해당업무 또는 영업에 관한 보고, 서류, 장부 등의 제출 명령을 위반한 때	「관세법」 제222조 제3항 및 제4항	1차 : 경고처분 2차 : 업무정지 5일 3차 : 업무정지 10일
5. 등록사항 변동신고 위반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 제5항	
6. 이 고시에 따른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세관장 명령을 위반한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 1차, 2차, 3차의 적용은 동일한 항목에 분류된 위반행위를 같이 적용
※ 제재기준의 1차, 2차, 3차 적용은 위반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의 기간으로 산정

위반내용	근거조항 및 관련 조항	제재내용
1. 화물운송주선업자 또는 그 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이나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관세법」 제224조 제1항 제4호 「관세법」 제269조, 제270조, 제271조, 제274조 및 제276조	1차 : 업무정지 20일 2차 : 업무정지 40일 3차 : 업무정지 60일
2.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주선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관세법」 제224조 제1항 제4의2호 「관세법」 제223조의2	
3.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이나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관세법」 제224조 제1항 제4호 「관세법」 제269조, 제270조, 제271조, 제274조 및 제276조	1차 : 업무정지 10일 2차 : 업무정지 20일 3차 : 업무정지 30일
4.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관세법」 제222조제3항 및 제4항, 제263조 및 제266조 제1항에 따른 업무 또는 영업에 관한 보고, 서류 및 장부 등의 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법에 의한 세관장 명령을 위반한 경우	「관세법」제224조 제1항 제4호 「관세법」 제222조 제3항 및 제4항, 제263조, 제266조 제1항	1차 : 경고처분 2차 : 업무정지 5일 3차 : 업무정지 10일 4차 : 업무정지 15일
5.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제6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동신	「관세법」 제224조 제1항 제4호 및 「관세법	

		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시행령」 제231조 제6항 | 6.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관세법」 제224조 제1항 제3호 | 업무정지 해당기간 ※ 1차, 2차, 3차의 적용은 동일한 위반내용에 분류된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위반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내의 기간으로 산정
p.459	② 사전통지 ①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려는 때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해당 화물운송 주선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청취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② 사전통지 ①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려는 때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해당 화물운송 주선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청취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p.506	**33 해설** 1회 이상 경쟁입찰에 부쳐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응찰가격 중 다음 회의 입찰에 체감될 예정가격보다 높은 것이 있는 때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해당 응찰자가 수의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는 차후 매각방법도 수의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경쟁입찰에 부친다. 이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재입찰에 부친 때에는 직전입찰에서의 최고 응찰가격을 다음 회의 예정가격으로 한다.	**33 해설** 2회 이상 경쟁입찰에 부쳐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응찰가격 중 다음 회의 입찰에 체감될 예정가격보다 높은 것이 있는 때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해당 응찰자가 수의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는 차후 매각방법도 수의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경쟁입찰에 부친다. 이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재입찰에 부친 때에는 직전입찰에서의 최고 응찰가격을 다음 회의 예정가격으로 한다.
p.529	④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의 하역·환적 ㉠ 세관장 허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해야 한다. •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 외국물품인 선박용품 등 적재	④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환적 ㉠ 세관장 허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이하 "원양어선"이라 한다)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해야 한다. •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선박용품 등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 선박용품 등의 범위 선박용품 등의 종류와 수량은 선박이나 항공기의 종류, 톤수 또는 무게, 항행일수 또는 운행일수, 여객과 승무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이어야 한다.	•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확인한 물품 ㉡ 외국물품인 선박용품 등 적재 선박용품 등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어선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 선박용품 등의 범위 선박용품 등의 종류와 수량은 선박이나 항공기의 종류, 톤수 또는 무게, 항행일수·운행일수 또는 조업일수, 여객과 승무원·선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이어야 한다.
p.530	㉣ 관세의 즉시 징수 외국물품인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세의 즉시 징수 외국물품이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549	㉦ "정기 수입세액 정산"이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관세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 "정산연도"란 수입세액 정산업체의 정산보고 대상기간이 되는 1회계연도를 말한다.	삭 제

p.556	**(3) 통관절차 등의 특례**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에게 다음의 혜택을 제공한다. <생 략> **(4) 사후관리 및 종합심사** ① 관리책임자 <생 략>	**(3) 통관절차 등의 특례**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에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상호 조건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자율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혜택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업체에 그 사유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수출입 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거나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상담·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에게 다음의 혜택을 제공한다. <생 략> **(4) 사후관리 및 종합심사** ①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가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기준 충족 여부를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그 변동사항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확인 및 보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관리책임자
p.559~561	④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 <삭 제> <생 략> ⑤ 종합심사	④ 종합심사
p.561	㉤ 심사의 범위 <생 략> • 수출입업체 :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분야(법규준수도와 관련된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환급, 감면, 외환, 보세화물관리, 사후관리 및 통관요건에 대한 세관장 확인업무 등) ※ 정산업체는 심사대상연도의 정산보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삭 제> • 관세사 : 「관세법」 및 「관세사법」과 그 밖의 관세사 직무 관련 법령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자료의 작성·관리상의 적정성 • 기타 업체 : 법과 그 밖의 업체별 관련 법령에 따른 세관신고·화물관리 등의 적정성	㉤ 심사의 범위 <생 략> • 수출입업체 :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분야(법규준수도와 관련된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환급, 감면, 외환, 보세화물관리, 사후관리 및 통관요건에 대한 세관장 확인업무 등) • 관세사 : 「관세법」 및 「관세사법」과 그 밖의 관세사 직무 관련 법령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자료의 작성·관리상의 적정성 • 기타 업체 : 법과 그 밖의 업체별 관련 법령에 따른 세관신고·화물관리 등의 적정성

p.563	⑦ 기업상담전문관의 지정·운영 ㉠ 의 의 <생 략> ㉡ 업 무 기업상담전문관은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주기적 확인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 개선계획의 이행 확인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신고사항에 대한 보정심사 등을 통한 신고내용의 수정, 정정 및 그 결과의 기록유지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변동사항 및 자체평가, 세관협력도의 확인 및 점검 • 그 밖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점검, 관리 및 컨설팅 • 정산업체의 수입세액 정산보고서 확인 및 점검 <삭 제> • 기업 프로필 관리	⑥ 기업상담전문관의 지정·운영 ㉠ 의 의 <생 략> ㉡ 업 무 기업상담전문관은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주기적 확인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 개선계획의 이행 확인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신고사항에 대한 보정심사 등을 통한 신고내용의 수정, 정정 및 그 결과의 기록유지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변동사항 및 자체평가, 세관협력도의 확인 및 점검 • 그 밖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점검, 관리 및 컨설팅 • 기업 프로필 관리
p.566	<신규 추가>	**(3) 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해야 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받은 경우 ②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당시의 업체와 동일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③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④ 자율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혜택의 정지 처분을 공인의 유효기간 동안 5회 이상 받은 경우 ⑤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그 밖에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570	<08번 해설> 외국물품인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8번 해설> 외국물품이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585	<40번 해설> 기업상담전문관은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주기적 확인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 개선계획의 이행 확인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신고사항에 대한 보정심사 등을 통한 신고내용의 수정, 정정 및 그 결과의 기록유지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변동사항 및 자체평가, 세관협력도의 확인 및 점검	<40번 해설> 기업상담전문관은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주기적 확인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 개선계획의 이행 확인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신고사항에 대한 보정심사 등을 통한 신고내용의 수정, 정정 및 그 결과의 기록유지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변동사항 및 자체평가, 세관협력도의 확인 및 점검

	• 그 밖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점검, 관리 및 컨설팅 • 정산업체의 수입세액 정산보고서 확인 및 점검 <삭 제> • 기업프로파일 관리	• 그 밖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점검, 관리 및 컨설팅 • 기업프로파일 관리
p.603	**(3) 자유무역지역법과 다른 법률의 관계** ① 관세법 적용 범위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자유무역지역에 물품 반출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자유무역지역법과 다른 법률의 관계** ① 관세법 적용 범위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유무역지역에 물품 반출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입출항 및 하역 절차 등 통관을 위하여 필수적인 절차가 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물품의 통관에 관하여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보다 「관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입주기업체에 유리한 경우
p.607~608	⑨ 입주제한 업종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자가 입주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관세법」에 따른 양허관세품목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의 입주를 제한해야 한다. 다만,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가공한 물품을 전량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의 입주**	**(3) 입주제한업종**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국민보건 또는 환경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풍속을 해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으로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4)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의 입주**

p.608	㉣ 입주 우선순위 설정 관리권자는 입주계약을 체결 시 "외국인투자기업,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자,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입주계약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생 략> • 입주계약이 해지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입주 우선순위 설정 관리권자는 입주계약을 체결 시 "외국인투자기업,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자,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입주계약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생 략> • 입주계약이 해지(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p.612	③ 내국물품 확인서 세관장은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된 내국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반입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내국물품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내국물품 확인서 세관장은 반입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자유무역지역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세관장은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된 내국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반입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내국물품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내국물품 확인서의 발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p.613	① 외국물품 반입신고 <생 략> ㉠ 보관·전시 목적 외국물품을 보관·전시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화물시스템에서 정한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반입신고해야 한다. ㉡ 사용·소비 목적 <생 략>	① 외국물품 반입신고 <생 략> ㉠ 보관·전시 목적 외국물품을 보관·전시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정한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반입신고해야 한다. ㉡ 사용·소비 목적 <생 략>

<table>
<tr><td></td><td>㉢ 다른 자유무역지역, 보세공장 또는 종합보세구역으로부터 제조·가공된 물품을 반입하는 때에는 전자문서로 반입신고해야 한다.
<삭 제></td><td></td></tr>
<tr><td>p.614</td><td>② 반입목적 정정신고
반입신고(사용소비신고한 경우 포함)한 물품을 당초 반입목적과 다르게 반입 또는 사용소비 하려는 자(동 물품을 해당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는 반입목적에 맞도록 정정한 반입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소비 신고한 물품을 일시 장치할 목적으로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용소비신고를 취하해야 한다.
<삭 제>
③ B/L 단위 신고</td><td>② B/L 단위 신고</td></tr>
<tr><td>p.621</td><td><table><tr><th>공·항만</th><th>적용지역</th></tr><tr><td>부산항</td><td>대한통운 부산 컨테이너터미널, 부산 신항만터미널, 부산 신항 국제터미널, 한진해운 신항만터미널, 부산신항 다목적터미널, 현대부산 신항만터미널, (주)비엔씨티</td></tr><tr><td>인천항</td><td>인천항 내항 제1부두 내지 제8부두, 남항컨테이너부두</td></tr><tr><td>인천공항</td><td>화물터미널</td></tr></table></td><td><table><tr><th>공·항만</th><th>적용지역</th></tr><tr><td>부산항</td><td>부산항터미널(주)신선대CY, 부산 신항만터미널, 부산 신항 국제터미널, 한진해운 신항만터미널, 부산신항 다목적터미널, 현대부산 신항만터미널, (주)비엔씨티</td></tr><tr><td>인천항</td><td>인천항 내항 제1부두 내지 제8부두, 남항컨테이너부두</td></tr><tr><td>인천공항</td><td>화물터미널</td></tr></table></td></tr>
<tr><td>p.622</td><td>㉡ 매각 요청
입주기업체는 반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외국물품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그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 화주(貨主)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화주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
• 화주의 주소·거소 등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화주가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td><td>㉡ 매각 요청
입주기업체는 반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외국물품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그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 화주(貨主)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화주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
• 화주의 주소·거소 등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화주가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td></tr>
</table>

		• 화주가 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p.624	㉢ 조사 방법 및 시기 재고조사는 서면심사 또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회계연도 종료 3월 이후 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관리체계 및 업무처리체제를 확인한 결과 세관장이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사 방법 및 시기 재고조사는 서면심사 또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회계연도 종료 3월 이후 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재료 등의 부정유출 혐의가 있는 등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재고조사를 할 수 있다.
p.636~638	**(2) 과태료 부과대상** ① 1억원 이하 •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② 1천만원 이하 <생 략> ③ 500만원 이하 <생 략> ④ 200만원 이하 <생 략> ⑤ 100만원 이하 <생 략>	**(2) 과태료 부과대상** ① 2억원 이하 •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를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한 특수관계자가 30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허위신고죄는 적용하지 않음) ② 1억원 이하 •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③ 1천만원 이하 <생 략, 2억원 이하 과태료 신규 추가에 따른 번호 변동 사항으로 내용 변동 없음> ④ 500만원 이하 <생 략> ⑤ 200만원 이하 <생 략> •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은 거짓 반입신고 ⑥ 100만원 이하 <생 략>

p.658	36 자유무역지역의 외국물품의 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외국물품을 보관 또는 전시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반입(장치)하려는 자는 수출입화물시스템에서 정한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해야 한다. ㉯ 외국물품을 사용 또는 소비할 목적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서 서식을 사용하여 수입통관시스템에서 정한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해야 한다. ㉰ 반입신고(사용소비신고한 경우를 포함)한 물품을 당초 반입목적과 다르게 반입 또는 사용소비하려는 자는 반입신고를 다시 정정할 필요가 없다. ㉱ 반입신고는 House B/L 단위로 해야 하며, 하선장소로 지정된 입주기업체에 컨테이너 상태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Master B/L 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 보세운송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되는 외국화물의 보세운송 도착보고는 반입신고로 갈음하며, 보세운송기간에 해야 한다. [해설] 반입신고(사용소비신고한 경우를 포함)한 물품을 당초 반입목적과 다르게 반입 또는 사용소비하려는 자(동 물품을 해당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양수한 자를 포함)는 반입목적에 맞도록 정정한 반입신고를 다시 해야한다. 이 경우 사용소비신고한 물품을 일시 장치할 목적으로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용소비신고를 취하해야 한다. [정답] ㉰	36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의 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해야 한다. ㉯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자가 외국물품을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입신고 외에 품목단위 반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 반입신고는 Master B/L 단위로 해야 하며, 하선 또는 하기장소로 지정된 입주기업체에 컨테이너 상태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House B/L 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 보세운송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되는 외국화물의 보세운송도착보고는 반입신고로 갈음하며, 그 반입신고는 보세운송기간 내에 해야 한다. ㉲ 「관세법」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외국물품으로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한 경우 반입신고에서 제외한다. [해설] 반입신고는 House B/L 단위로 해야 하며, 하선 또는 하기장소로 지정된 입주기업체에 컨테이너 상태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Master B/L 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정답] ㉰

p.734	**<04번 해설>** 정산보고 확인 관세사는 최소 2인 이상 선임해야 한다. 정산보고의 확인(「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18조의5) ① 정산업체는 동 고시 제18조의4(정산보고)에 따른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의 정확한 검증 및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관세사의 검증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정산업체는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 확인 관세사를 최소 2인 이상 선임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세사는 선임할 수 없다. 1. 정산업체에 소속된 관세사 2. 정산업체를 위해 「관세사법」제2조 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물품의 수출입 신고 및 환급청구 등 업무를 하는 신고인 관세사 3. 그 밖에 수입세액 정산보고 확인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04번 해설>** 정산보고 확인 관세사는 최소 2인 이상 선임해야 한다. ※ 2021년 보세사 자격시험 당시 근거 자료가 되던 관련 조항인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5가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관련 제도의 폐지에 따라 삭제되었습니다. 학습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p.771	**12 「관세법」상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고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	**12 「관세법」상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받기 위하여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에 통관절차 및 관세행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공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공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관세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거나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상담·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혜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 공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공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관세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거나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상담·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p.753	**11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물품반입정지 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인에게 물품반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과징금의 한도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 갈음하는 반입정지일수 1일당 연간매출액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한다. ㉰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 산정 금액의 4분의 1 이내에서 세관장이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 과징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다.	**11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물품반입정지 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인에게 물품반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과징금의 한도는 연간 매출총이익의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 갈음하는 반입정지일수 1일당 연간매출액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한다. ㉰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 산정 금액의 4분의 1 이내에서 세관장이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p.776	**24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 지정은 관세청장이 한다. ㉯ 세관장은 정산업체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24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예비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신청업체가 예비심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비심사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수입 부문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업체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정산업체는 매년 직전 정산연도의 수출입신고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자체점검하고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세관장은 정산업체가 제출한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를 심사하고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 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서를 정산업체에 통지해야 한다.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관세청장은 예비심사를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은 중소 수출기업이 예비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신청업체에 우선하여 예비심사를 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은 예비심사 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신청업체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심사를 위탁받은 기관은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p.790	11 ㉲	11 ㉮
p.791	11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관세법 시행령」 제285조의7 제5항).	11 과징금의 부과한도는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3이다.
p.796	**04**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을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04**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을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하역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p.798	<17번 해설> 기업상담전문관은 관할지 세관별이 아닌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별로 운영된다. 기업상담전문관은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주기적 확인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 개선계획의 이행 확인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신고사항에 대한 보정심사 등을 통한 신고내용의 수정, 정정 및 그 결과의 기록유지	<17번 해설> 기업상담전문관은 관할지 세관별이 아닌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별로 운영된다. 기업상담전문관은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주기적 확인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 개선계획의 이행 확인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신고사항에 대한 보정심사 등을 통한 신고내용의 수정, 정정 및 그 결과의 기록유지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변동사항 및 정기 자체평가, 세관협력도의 확인 및 점검 • 그 밖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점검, 관리 및 컨설팅 • 정산업체의 수입세액 정산보고서 확인 및 점검 <삭 제> • 기업 프로필 관리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변동사항 및 정기 자체평가, 세관협력도의 확인 및 점검 • 그 밖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점검, 관리 및 컨설팅 • 기업 프로필 관리
p.799	<24번 해설> 세관장은 정산업체가 제출한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를 심사하고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기 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서를 정산업체에 통지해야 한다.	<24번 해설> 관세청장에 예비심사를 위탁받은 기관은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주)시대고시기획이 응원합니다!

SD에듀
(주)시대고시기획